


의정활동보고서



제314회 임시회(2020. 3. 26 ~ 3. 30)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14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웁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대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도지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한 일상생활을 곳곳이 이겨내고 계시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언제나 우리 경북은 선봉에 서서 국난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힘을 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단축·연기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최대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진단·치료 등 광역체계 개선·보완을 위한 감염병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추진 중인 대책들을 재점검하고 사후대책도 충분히 검토·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결되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경제회복과 도민들의 일상에 활력이 하루빨리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 연기와 학원의 휴원 등으로 어린이와 학생을 둔 젊은 세대의 고충도 지원·해결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바쁘시더라도 꼭 챙기셔서 옹도 경북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힘을 모아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3백만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경 식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1
III. 의안처리		20
IV. 민원처리		21
V. 본회의 보고사항		23
VI. 5분 자유발언		27
□ 배진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27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32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35

부 록

□ 조	례	안(18건)		41
□ 규	칙	안(1건)		127
□ 결	의	안(1건)		139
□ 동	의	안(6건)		143
□ 예	산	안(1건)		157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는 2020년 3월 26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월 30일까지 5일간의 회기 동안 2차 본회의와 7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4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3월 26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월) 11시에 개의하여 한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등 27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진단·치료 등 광역체계 개선·보완을 위한 감염병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며, 침체된 경제회복과 300만 도민들의 일상에 활력이 하루빨리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15회 임시회로 2020년 5월 6일 오후 13시 40분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20년 3월 26일(목)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20년 3월 26일 ~ 3월 30일(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19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1	1	1	1	1	1	1	1	1	3
누 계	630	52	81	76	66	57	59	68	87	84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6(목) 11:00 (제1차)	○ 5분 자유발언(배진석, 김상현 의원) □ 안전처리 • 경상북도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 ○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3. 30(월)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남영숙 의원) □ 안전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3. 30(월) 11:00 (제2차)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신임 위원장(홍정근) 인사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남영숙) 부위원장(박미경) 인사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6(목) 13:30 (제1차)	☐ 안전처리 ○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안)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6(목) 10: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투자유치실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대변인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6(목) 10:00 (제1차)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년정책관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 (일자리경제실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학산업국 소관)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락산업국 소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6(목) 10:00 (제1차)	☐ 안전처리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위원회 안) ○ 경상북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 보고(자치행정국 소관) ○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 보고(아이여성행복국 소관)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아이여성행복국 소관)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상황 보고(감사관 소관)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 소관)	

〈문화환경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6(목) 14:00 (제1차)	☐ 안전처리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 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농수산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26(목) 14:00 (제1차)	☐ 안전처리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 ○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위원회 안)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농축산유통국 소관)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농축산유통국 소관)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국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6(목) 14:00 (제1차)	☐ 안전처리 ○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소관)	

〈교육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6(목) 14: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제출)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 코로나19 예방 대책 상황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7(금) 10:30 (제11차)	☐ 안전처리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재난안전실·일자리경제실·아이여성 행복국·복지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감사관·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자치행정국(경북도립대)·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통합신공항추진단·과학산업국·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원·동해안전락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개회의시	심 의 안 건	비고
3. 20(월) 12:00 (제1차)	☐ 안전처리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남영숙) 인사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박미경) 인사	
4. 21(화) 11:00 (제2차)	☐ 안전처리 ○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3.30(월) 10:20 (제7차)	☐ 안건처리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홍정근) 인사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	처리 ㉠+㉢	의 결				철 회 ㉢	계 류 ㉣	비고	
				계 ㉠	가 결		부 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38 (459)	36 (450)	36 (448)	34 (412)	2 (34)	0 (2)	0 (0)	0 (2)	2 (9)	
조 례 안	소 계	20 (248)	18 (242)	18 (242)	18 (222)	0 (19)	0 (1)	0 (0)	0 (0)	2 (6)	
	의회 제안	17 (171)	15 (165)	15 (165)	15 (156)	(9)				2 (6)	
	도지사 제출	2 (51)	2 (51)	2 (51)	2 (43)	(8)					
	교육감 제출	1 (26)	1 (26)	1 (26)	1 (23)	(2)	(1)				
규 칙 안		1 (4)	1 (4)	1 (4)	1 (4)						
예산·결산		2 (22)	2 (22)	2 (22)	(11)	2 (11)					
동의·승인		6 (62)	6 (62)	6 (60)	6 (55)	(4)	(1)		(2)		
건의안		1 (3)	1 (3)	1 (3)	1 (3)						
결 의 안		2 (35)	2 (35)	2 (35)	2 (35)						
기 타 안		6 (85)	6 (82)	6 (82)	6 (82)					(3)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14회) 의회 누계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2 (40)	(10)		(2)	(7)	(3)	(1)	1 (11)	(2)	1 (4)
의 회 운 영										
기 경 제	(4)			(2)			(1)	(1)		
행 정 보건복지	1 (9)	(7)								1 (2)
문 화 환 경	1 (10)							1 (10)		
농수산	(7)	(3)							(2)	(2)
건 설 소 방	(7)				(7)					
교 육	(3)					(3)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2 (39)	2 (39)				1
의회운영						
기획경제	(4)	(4)				
행 정 보건복지	1 (9)	1 (9)				
문화환경	(9)	(9)				1
농 수 산	(7)	(7)				
건설소방	1 (7)	1 (7)				
교 육	(3)	(3)				
특별위원회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38건(조례안 20, 규칙안 1, 예산안 2, 결의안 2, 동의안 6, 건의안 1, 기타안 6)

2. 처리 의안 : 36건

- 원안가결 의안 : 34건(조례안 18, 규칙안 1, 결의안 2, 동의안 6, 건의안 1, 기타안 6)
- 수정가결 의안 : 2건(예산안 2)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20건(원안가결 18, 계류2)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20. 3. 26.	위 원 장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	2020. 3. 13.	도기욱 의원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0. 3. 13.	김대일 의원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 2. 20.	조현일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	박승직 의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	김상현 의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	남용대 의원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0	"	박용선 의원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
11	"	김영선 의원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12	"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13	"	김희수 의원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
14	"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5	2020. 2. 20.	남진복 의원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16	"	도지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도지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	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9	"	이철구 의원	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류
20	"	김영선 의원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규 칙 안 : 1건(원안가결 1)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20. 3. 26.	위 원 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 결 의 안 : 1건(원안가결 2)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20. 3. 26.	의회운영 위 원 장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 가결
2	"	"	감염병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동 의 안 : 6건(원안가결 6)

연 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20. 3. 13.	도지사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2	2020. 2. 20.	도지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
3	"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4	"	교육감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	도지사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6	2019. 10. 25.	교육감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건 의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20.3.26.	위 원 장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 예 산 안 : 2건(수정가결 2)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20.3.25.	도 지 사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2	2020.3.19.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기 타 안 : 6건(원안가결 6)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2020. 3. 30.	의 장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 가결
2	2020. 3. 26.	"	휴회의 건	"
3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5	"	"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6	2020. 2. 20.	"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조례·규칙 공포 사항 : 19건(도 16, 교육청 2, 도의회 1)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31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3. 30.	조례
2	제4311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3. 30.	"
3	제4312호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2020. 4. 2.	"

연 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4	제4313호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4. 13.	조례
5	제4314호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6	제4315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
7	제4316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8	제4317호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	"
9	제4318호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	"
10	제4319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
11	제4320호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	"	"
12	제4321호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13	제4322호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
14	제4323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5	제4324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
16	제4325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	"
17	제4326호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18	제4327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9	제81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	"	규칙

VI. 5분 자유발언

□ 2020년 3월 26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배진석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감염병 대응 전문 인프라 확충 촉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일상이 멈춤 힘든 현실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경북의 품격을 보여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상북도의 감염병 대응 전문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감염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이송할 마땅한 의료기관을 구하지 못해, 병원을 통째로 봉쇄·격리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지역의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절감했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속출했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료진과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 등의 특수장비의 부족은 물론, 감염병 치료의 필수 장비인 음압병상은 고작 34개밖에 없어(표 1 참조) 지역의 환자들을 부산·경남 등 전국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에도 경북의 환자들은 타 시도의 38개 병원에 뿔뿔히 흩어져 누구보다 큰 고립감과 두려움 속에서 ‘유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120개 늘리고, 영남과 중부 2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신규 지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감염병 관련 시설·장비 보강과 함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국비 요청을 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의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북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한 감염병 대응 전문 인프라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경북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표 2 참조). 상급종합병원이 충남·전북·경남·강원·충북·전남 등은 지정되어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지난 2월 22일 중증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지사님께서서는 다른 시·도 단체장에게 중증확진자를 받아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도민들이 치료할 전문병원을 찾아 다른 시·도로 가야 합니까?

더 이상 목숨을 살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민들은 인접한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5개 대학병원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구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도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보았
습니다.

경북에는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경주에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인력과 장비, 규모 등을 갖추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되어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감염병에 대응할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지게 되고 신속한 치료와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 발생과 지역을
넘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확산되는지를 증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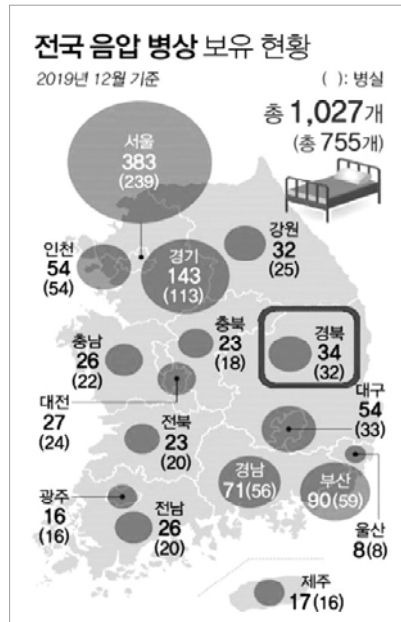
경주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 천만 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관광
도시입니다. 감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되도록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거듭 촉구 합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지역보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경북 도민

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한
전문 감염병 예방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상
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1〉 전국 음압 병상 보유 현황

진료시도	지정기관명
강원(1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2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전북(2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1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남(2개)	경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0개)	-
전 국	총 42기관

〈표 2〉 상급종합병원 지정 명단('18~'20년)

□ 2020년 3월 26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피해를 겪고 있는 경상북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에 준한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은 오늘 기준 총 1,218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대구와 함께 경산, 청도, 봉화지역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경제의 숨통마저 막아 버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적 격차두기’로 번져 경기가 위축되는 등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코로나 극복정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도 시급합니다. 이미 여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북도도 이번 추경을 통해 재난긴급생활비 2,089억 원을 33만 5,375가구에 지급하는 등 총 3,812억 원의 민생경제예산을 투입해 경제 살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경북도민들에게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되지 못합니다. 위의 긴급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고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선별적 지급방식은 프리랜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미취업 청년, 학원 강사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생하게 만듭니다. 또한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재정적 낭비도 초래됩니다. 특히 지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민생경제예산으로 책정된 3,812억 원 중 2,700억 원을 270만 경북도민 각자에게 10만 원씩 현금으로 준다면 지금 경상북도가 제시한 방식보다 더 빠르고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과감한 대책이 경북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진자 수가 387명에 불과한 경기도도 진행하는 사업을 우리 경북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만큼 도민 전체가 힘든 상황임을 도지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19 피해자는

어느 특정 계층, 특정 직업군이 아닙니다. 전체 도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서 더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도민들에게 공공요금 감면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는 없는지요? 어려운 시기에 경제정책의 수혜대상에서 특정 계층을 제외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어느 것 하나 경상북도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나은 것, 먼저 시행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일자리정책 등 상당한 재원을 동원한 종합적인 정책패키지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 어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당장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도민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판매'와 같은 획기적인 정책을 이철우 도지사님께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년 3월 30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회) ◎

《학교 코로나19 방지 대책 관련》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중·고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에 관
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각급학교의 학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
교육부에서는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까지 2주간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학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과 학생과 교직원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개학하는 방안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가 개학하면 학교 내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과 이로 인한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청
소년의 감염 비율이 성인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19세 이하 미성
년자의 누적 확진자 숫자가 3월 7일 379명에서 29일 현재까지

619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 경북의 19세 이하 미성년자 확진자 수는 39명입니다.

본 의원은 개학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경상북도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분야별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대응에서 벗어나 부서별로 업무협치를 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팀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대응팀은 감염병 예방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복지, 학사, 복무, 급식, 방역 등 행정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등은 예산지원보다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일선 학교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가정 내에서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문화가 확산·정착되는데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초·중·고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교육과 학생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 학교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생활 안전 수칙을 지키고 학교 밖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특히 인지력과 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의 또 다른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모든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학교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온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18건)		41
□ 규	칙	안(1건)		127
□ 결	의	안(1건)		139
□ 동	의	안(6건)		143
□ 예	산	안(1건)		157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위원장('20. 3. 26)
-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기욱 의원('20. 3. 13)
-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일 의원('20. 3. 13)
-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현일 의원('20. 2. 20)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승직 의원('20. 2. 20)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상헌 의원('20. 2. 20)
-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용대 의원('20. 2. 20)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열 의원('20. 2. 20)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춘우 의원('20. 2. 20)
-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박용선 의원('20. 2. 20)

-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김영선 의원('20. 2. 20)
-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춘우 의원('20. 2. 20)
-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희수 의원('20. 2. 20)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춘우 의원('20. 2. 20)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진복 의원('20. 2. 20)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2. 20)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20. 2. 20)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20. 2. 20)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해산비·장제비
6. 긴급지원비
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는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1조(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6. “선정 대리인”이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
이라 한다)의 불복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제9장(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으로 하고, 제8장(제32조부터 제3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선정 대리인

제32조(이의신청인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3조(선정 대리인의 위촉)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세무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세무사
3.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선정 대리인의 임기) ①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35조(납세자에 관한 정보보호)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

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6조(선정 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선정 대리인의 포상 등)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제38조(선정 대리인의 실비변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

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등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선정 대리인 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1조(중전의 제33조) 중 “제32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장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 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 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임기 시작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5. (생략) <u>〈신설〉</u>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1조(목적)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2조(정의)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 4. ~ 5. (현행과 같음) 6. “선정 대리인”이란 법 제9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불복청구 업무를 지식기부를 통하여 대리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 ----- -- 법 ----- ----- -----.

현행	개정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 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u>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u> <u>제8장 선정 대리인</u> <u>제32조(이의신청인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u>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u>제33조(선정 대리인의 위촉)</u>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세무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2. 세무사 3.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 한정한다)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선정 대리인의 임기) ①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 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 하여야 한다.
〈신설〉	제35조(납세자에 관한 정보보호)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제36조(선정 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직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선정 대리인의 포상 등)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제38조(선정 대리인의 실비변상)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 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등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선정 대리인 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9장 (현행 제8장과 같음)
제32조 (생략)	제40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제33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32조제1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41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제40조제1항-----.
제34조 (생략)	제42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3개 이상의”를 “3개를 초과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u>3개 이상의</u>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u>〈신 설〉</u> <u>〈신 설〉</u> 1. · 2. (생 략) ⑤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3개를 초과하여</u> ----- -----. -----. 1. <u>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u>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u>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경우</u> 3. · 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을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에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
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
(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대장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지역의 대원 경력을 포함한다.

제3조(신청 등)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원의 자녀는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장학생 선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조의 자격자 중 다음 각 호 해당자를 우대하여 심사하고, 선발·결정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4. 추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5. 「상훈법」에 의한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6.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7.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원의 자녀

② 장학생은 동일인이 고등학교 재학 시 1회, 대학교 재학 시 1회에 한하여 선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고,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소방서 관할 구역 장학생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수는 소방서 관할구역별 매년 1월 1일 기준 의용소방대원 수의 100분의 5로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비율은 장학생 수의 범위

에서 조정·선발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선발된 해당 연도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고등학생의 해당 연도 장학금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한 고등학교 1급지 공립 일반계열 수업료 연액 이내로 한다. 대학생의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편성 및 지급) ① 경상북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생은 매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학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제적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할 수 없으며, 정지 사유 발생 이후 지급을 정지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이하 “본대”라 한다)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대의 현원이 정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소속 본대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하는 정원은 본대의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분류 중 건축, 토목, 건설기계운전, 자동차, 용접,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에너지·기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2항의 일반조종면허를 가진 사람
3. 산악구조협회 등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을 보유한 사람
5. 소방 관련 또는 구급에 관한 학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 또는 활동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은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면직·해임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고문의 위촉)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조직) 제2조제1항에 따라 본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대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추천) 소방서장이 대장 및 부대장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의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②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대장 및 부대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9조(정원)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지역 : 40명 이내

2. 면지역 : 30명 이내

3. 지역대 : 20명 이내

4. 전문·전담의용소방대 : 시·읍, 면지역, 지역대 정원 이내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는 제1항의 정원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시·군별로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0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의용소방대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중에서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①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
2.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
3. 법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신규임명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소집금지
5.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의 지정 및 취소
6. 제2조제5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해산 및 활동정지

7. 제18조의 성과중심의 보상 심의(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8.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추천
9.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12조(전담의용소방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 의용소방대원을 지정한 장소에서 1일 4시간 이상 출동대기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복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지도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등) ①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은 「소방장비 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지도·감독) 의용소방대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교육·훈련)** ① 대장 및 부대장은 임명 후 2년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미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의용소방대원으로 신규 임명되었을 때에는 2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이 기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6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17조(소집수당) 소집수당은 매월 임무를 수행한 총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성과중심의 보상)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
내·외 견학 및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과 소방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에게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
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6장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20조(설립) 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별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21조(지역연합회의 기 및 표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합회는 기를 두고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업무) 지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원 복리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도 및 시·군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등

제23조(회원 등) ① 도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은 소방서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를 대표하는 연합회장으로 하고 소방서연합회의 회원은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는 대장으로 한다.

② 도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소방서연합회의 회장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24조(회장 등의 임기) ① 도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1월 1일로 한다.

④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중 대장의 직위에서 면직되었을 때에는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당연히 종료한다. 또한 소방서연합회장의 직위에서 면직되었을 때에도 도연합회장의 임기는 당연히 종료한다.

제25조(자격정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지역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26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소방서연합회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대 통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현원이 정원의 2분의 1 이하인 지역대의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현원을 정원의 2분의 1 초과하도록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대장, 지역연합회장의 임기개시일 규정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장 및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조례 시행 후 임명된 대장 또는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개시일은 종전 대장 또는 지역연합회장의 임기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하며, 대장의 임기는 만료일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임기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장·부대장 및 신규 의용소방대원 중 제15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조(소방서연합회장 연임에 관한 적용례) 소방서연합회장에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된 소방서연합회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소방서연합회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6조(의용소방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경상북도 조례 제3629호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조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의용소방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도연합회의 연임규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도연합회장의 연임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를 포함한다): 50퍼
센트 미만

제7조의 제목“(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시설 확보)”를“(지구
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같은 항 제1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을 “공공시설 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2”로 한다.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 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 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기반 시설 확보)</u> <u>〈신 설〉</u>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u>기반시설</u>이 취약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 5. (생 략)	<u>제6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의 경미한 변경)</u> 영 제25조제3항 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 (층수를 포함한다) : 50퍼센트 미만 <u>제7조(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 시설등 확보)</u> ① 영 제42조의3제2항 제12호다목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 ----- ----- 공공시설등(같은 항 제12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u>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u>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u>기반시설 설치내용 등에 관한 사항</u>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 <u>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u>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다. 3. (생략)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과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공공시설 또는 학교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 -----. 1. ----- ----- 공공시설등 ----- ----- -----. 2. 공공시설등 ----- 제7조의2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위가 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 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 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위가 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감정 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 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용어의 뜻)”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을 “사람으로서”로 하고, “생계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을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로 하며, “두고
거주하고 있는”을 “두고 있는”으로 하며,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월 90만원”을 “월 100만원”으로, “2인”을 “2명”
으로, “1인을”을 “1명을”로, “1인당 30만원을”을 “1명당 50만
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세부적인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 다음과 -----.		
2. “민간인”이란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자로서 생계비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독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사람으로서 매월 생계비 지급 일 기준으로 -----		
		----- 두고 있는 사람을 -----.		
제3조(생계비 지원) ① (생 략)		제3조(생계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계비 지원기준은 세대당 월 90만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3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월 100만원-----		
③ 생계비 지원방법과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2명----- 1명을 -----		
제4조(지원제한) (생 략)		-- 1명당 50만원을 -----.		
1. 독도거주가 더 이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		
2. 그 밖에 도지사가 생계비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제한) (현행과 같음)		
		1. -----		
		----- 사람		
		2. -----		
		----- 사람		
		제5조(시행규칙) -----		
		----- 사항은 -----.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말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
북도 말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한국마사회 영천경마장

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퍼센트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인프라 조성
3. 말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말이용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사육농가 등 말사업자 지원
4. 말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말산업 관련 연구·학술활동
6.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말산업 해당 업무 과장·소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말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업무 주무관

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축산유통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축산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 축산신산업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최초로 승마투표권을 발행하는 연도 다음 연도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경상북도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자문) 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
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홍보
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 등 공익사업
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비영리법인·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계적인 보급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이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이하 “안전관리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안전관리시책을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지역 경찰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시책의 수립 및 변경
2.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현황조사
3.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자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지역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안전, 소방업무 분야별 과장급 1명

나. 환경보건 연구기관 또는 화학물질 측정분석기관의 과장급 1명

2. 위촉직 위원

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나. 지방환경관서의 화학물질 관련 부서장

다.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화학물질 관련 사업체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전일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 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안전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도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물·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연구·조사 등)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등을 산하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 의하여 합동훈련 또는 모의 도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임진왜란 연합의병 창의정용군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시 경상도의 연합의병인 창의정용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의정용군이란 임진왜란 기간 중 영천성 수복 전투 등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순국한 경상도 연합의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의정용군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의정용군의 역사·문화유산 복원
2. 창의정용군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
3. 창의정용군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가치 교육·홍보
4.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
5. 창의정용군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6. 창의정용군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
7. 그 밖에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조 요청)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기술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신기술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2. “우수기술”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검토하여 지정·등록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4. “특수공법”이란 신기술 및 우수기술 외의 독점적 권리를 가진 공법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 또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1.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2.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3.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도비지원 사업 중 해당 발주청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분야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급공사 및 주요 민간건설 현장에서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공법선정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지역 우수기술 지정·등록을 심의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법(신기술·우수기술)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우수기술 심의·등록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
 4.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전성능검증 사항
 5.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
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
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제9조의 심의·자문
요청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
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심의·자문요청) ① 제6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공법(신기술, 우수기술 등)의 선정을 위하여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후보군(5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기술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개발자가 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관급 공사에 해당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우수기술의 지정·등록 및 신기술·우수기술 활용 촉진

제11조(우수기술의 지정·등록) ① 도지사는 기술개발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심의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우수기술로 지정·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기술 지정·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기술의 활용 노력 등) ① 발주청은 우수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과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우수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우수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신기술의 적용 관련 책임 규정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4조(신기술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우수기술 명칭 또는 번호, 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 및 우수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그 밖에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 및 공법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등록·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신기술 및 우수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신기술 또는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자 육성, 신기술의 실용화와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8조(포상) ① 도지사는 우수한 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우수기술 지정의 취소) 도지사는 우수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수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마사회의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경마장에서 직접 발매하는 승마투표권 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 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수 설〉</u>	<u>제6조의2(경마장에 대한 세액경감)</u> <u>「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u> <u>마사회의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경마</u> <u>장에서 직접 발매하는 승마투표권</u> <u>및 장외발매소에서 경주실황을 수신</u> <u>하여 발매한 승마투표권에 부과되는</u> <u>레저세 중 「지방세법」 제42조 및</u> <u>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산출</u> <u>된 레저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u> <u>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광 사업”을 “관광사업”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제31조제2항 관련)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관광사업 지원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3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31조(관광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u>② 도지사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9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③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u>관광사업</u>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u>제31조(관광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관광사업</u>-----.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공무원 정원”으로, “7,036명”을 “7,494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40명”을 “2,23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4,636명”을 “5,09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별표 2의 제목 및 별표 3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부분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9% 이내	33% 이내	36% 이내	5% 이상	1% 이내

비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정원 7명(4급 1, 5급 1, 6급 2, 7급 3)은 제외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38% 이내	62%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9급상당
비 율	25% 이내	55% 이내	-	18% 이내	2%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9% 이내	16% 이내	30% 이내	33% 이상

[별표 3]

경상북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 청
합 계		7,494	-					
정 무 직		1	-					
일 반 직	소 계	2,068	-					
	2급	1				1		
	2~3급	2	1	1				
	3 급	12	9		1	2		
	3~4급	2	2					
	4급	94	62	8	5	9	9	1
	5급 이하	1,943	-					
	전문경력관	14	-					
	소 계	17	-					
별 정 직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3	-					
연 구 직	소 계	240	-					
	연구관	44			43		1	
	연구사	196	-					
지 도 직	소 계	30	-					
	지도관	10			10			
	지도사	20	-					
소 방 직	소 계	5,095	-					
	소방정	24	5		19			
	소방령 이하	5,071	-					
교 원	소 계	43	-					
	총 장	1			1			
	교 수	31			31			
	조 교	1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3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집행기관의 정원 : <u>2,240명</u>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4,636명</u> 3.·4. (생 략) <u>제3조(정원책정기준) ①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u> <u>②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u>	<u>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경상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공무원 정원-----7,494명-----.</u> 1. ----- <u>2,239명</u> 2. ----- <u>5,095명</u> 3.·4. (현행과 같음) <u>제3조(정원책정기준) ①-----공무원-----.</u> <u>②-----공무원-----.</u>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 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u>지방공무원</u>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 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도에 두는 <u>지방공무원</u>의 정원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 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 ----- ----- <u>공무원</u> ----- -----. ----- ----- -----.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 <u>공무원</u> ----- ----- -----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해안 정책, 해양수산 등 환동해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를 “및 건설도시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 경제실장”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③ 경상북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기술지원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지원국장”을 “농촌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민생본부장·인재개발 정책관”을 “과학산업국장·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 담당사무관”을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 경제실장”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상북도인재 개발원”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한다.

⑧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단서, 제52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 단서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각각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아이여성행복국장”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지역균형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⑬ 경상북도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과장”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

⑭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조례”를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원”을 각각 “인재개발원”으로, “교육원장”을 각각 “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로 한다.

⑮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입법정책관”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2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890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알천남로 276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강변로 219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육사로 301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수출대로 112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서로 448번길 17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호국로 187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상산로 322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중앙로 305	문경시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2	경산시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741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영덕소방서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401	영덕군 일원
청도소방서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 192-34	청도군 일원
고령소방서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18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193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	칠곡군 일원
예천소방서	예천군 예천읍 양궁로 61-12	예천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508	울진군 일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지사) ① · ② (생 략)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제4조(부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동해안 정책, 해양수산 등 환</u> <u>동해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제5조(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 조정실·재난안전실·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아이여성행복국·자치 행정국·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 통국·환경산림자원국·복지건강국 <u>·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u> <u>〈신 설〉</u>	제5조(설·국·본부의 설치) ① --- ----- ----- ----- ----- ----- <u>및 건설도시국-----.</u> <u>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u> <u>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u>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지역>의 “삼근초등학교”란을 삭제하고, <라
지역>의 “경상북도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란 다음에 “삼근초등
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울진군	서면 삼근2길 23	삼근초등학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벽지 〈다지역〉 <table><tr><th colspan="2">기관소재지</th><th rowspan="2">기관명</th></tr><tr><th>시·군·구</th><th>위치</th></tr><tr><td>울진군</td><td>서면 삼근2길 23</td><td>삼근초등학교</td></tr></table> 〈라지역〉 <table><tr><th colspan="2">기관소재지</th><th rowspan="2">기관명</th></tr><tr><th>시·군·구</th><th>위치</th></tr><tr><td>〈신</td><td></td><td>설〉</td></tr></table>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울진군	서면 삼근2길 23	삼근초등학교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신		설〉	[별표] 2. 벽지 〈다지역〉 <table><tr><th colspan="2">기관소재지</th><th rowspan="2">기관명</th></tr><tr><th>시·군·구</th><th>위치</th></tr><tr><td>〈삭</td><td></td><td>제〉</td></tr></table> 〈라지역〉 <table><tr><th colspan="2">기관소재지</th><th rowspan="2">기관명</th></tr><tr><th>시·군·구</th><th>위치</th></tr><tr><td>울진군</td><td>서면 삼근2길 23</td><td>삼근초등학교</td></tr></table>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삭		제〉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울진군	서면 삼근2길 23	삼근초등학교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울진군	서면 삼근2길 23	삼근초등학교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신		설〉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삭		제〉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치																																
울진군	서면 삼근2길 23	삼근초등학교																															

二 규 칙 안 二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20. 3. 26)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4월 6일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81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u> <u>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u>	<u>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u> <u>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경상북도</u> <u>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u> <u>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경상북도의회</u> <u>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u> <u>지원에 관한 조례</u>」----- -----.

[별지 제1호 서식]

위 축 장(안)

○ ○ 대 학 교

교수 김 ○ ○

귀하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별지 제2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을 신청합니다.

1. 단체의 명칭 :

2.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고

3. 회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변경사항 통보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단체의 명칭 :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변동일자
대표자					
회 원 (의 원)					
회 원 (외부전문가)					

년 월 일

[통보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〇〇년도 연구활동계획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불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특기사항		

일 일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

구 분	주 요 내 용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연 구 목 적		
연구경비 신청내역	총 액	
	세 부 산출내역	「세부 산출내역 붙임」 ※ 자료수집비, 인쇄비, 강사료, 회의비, 세미나비, 물품구입비, 전문가 자문경비 등

붙임 :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단체의 명칭		
대표자성명		의원
심사 결과	심사 내용	
	연 구 활동비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연구 내용	당 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〇〇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〇〇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단체의 명칭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액	금	원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전문가 활용 경비	금	원
기 타		금	원	
특기사항				

[붙임] 1. 〇〇년도 연구활동결과 최종보고서 3부

2. 〇〇년도 연구활동비 정산서 3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대표 ○ ○ ○ (인)

경상북도의회 의장 귀하

＝ 결 의 안 ＝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장('20. 3. 26)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 제안이유

- 제3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도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20. 5. 6.(수) 13:40(제1차 본회의)
 - 2020. 5. 7.(목) 14:00(제2차 본회의)
 - 2020. 5. 20.(수) 11:00(제3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 동 의 안 ＝

-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20. 3. 13)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도지사('20. 2. 20)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20. 2. 20)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20. 2. 20)
-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도지사('20. 2. 20)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감('19. 10. 25)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2020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총괄표

(단위 : m²,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 득	계	토지	1건	118,906	2,000,000	
		건물	1건	10,237	13,000,000	
		기타				
	1. 매 입	토지	1건	118,906	2,000,000	
		건물				
		기타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1건	10,237	13,000,000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예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면적)				
1	토지	구미 옥성면 옥관리	118,906	2,000,000	'21. 12.	- 경상북도 가축유통자원 분산센터 신설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 공개경쟁입찰	경상북도 축산기술 연구소 (신 축)
	건물	산107번지 등 4필지	건축연면적 10,237	13,000,000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
- 규 모 : 268천㎡(81천평)
- 사 업 비 : 1,451억 원(보상비 626, 조성비 등 536, 기타 289)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 근 거 법 : 도시개발법

2. 추진경위

- 2018. 3. 12. : 고령군 사업제안서 접수
- 2018. 8.~9. : 구역계(안) 및 토지이용구상(안) 작성
- 2018. 9. 21. : 도시개발사업 참여 요청(고령군 → 公社)
- 2018. 4.~11. : 현장조사 및 GB해제 등 사업방식관련
지자체 협의
- 2018. 9.~2019. 6. : 사전 타당성 및 주택수요 추정 검토

- 2018. 11.~2019. 9. : GB해제 관련 농림부, 국토부
협의를(6회)
- 2019. 12. 13.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위원회 심의
- 2019. 12. 20.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적정)
- 2020. 2. 5. : 이사회 의결(원안가결)

3. 향후 추진계획

- 2020. 6. : 개발제한구역 해제(고령군) 및 조사설계용역
시행
- 2021. 6. :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 2022. 5.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23. 5. : 실시계획 승인 및 조성공사 착공
- 2026. 하반기 : 공사 준공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

- ☐ 사업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민간위탁
- ☐ 위탁 기간 : 2020. 7. 1. ~ 2020. 12. 31.(6개월)
- ☐ 위탁 대상 : 사회복지 관련 법인,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
- ☐ 사업비: 1억 6,000만원(기관당 8,000만원)
- ☐ 사업 대상
 - 지역 : 비사업학교 취약계층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포항, 구미 지역 각각 1곳
 - 지원 대상 : 초·중학교 비사업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
- ☐ 사업 내용
 - 비사업학교 교육복지 지원 공동 프로그램 운영
 - 비사업학교 취약계층 학생 사례관리
 - 비사업학교 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 지원 및 컨설팅
 - 비사업학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 취득재산 96,642,044천 원

- 토 지 : 20,445㎡ 4,661,602천 원(2건)
- 건 물 : 28,168㎡ 91,980,442천 원(9건)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부지 취득 (2건)

- 김천중앙고등학교
(이전 신축) 15,773㎡(4,771평) 2,120,034천 원
- 호명초등학교
(교사동 증축) 4,672㎡(1,413평) 2,541,568천 원

○ 청사 개축을 위한 건물 취득 (1건)

- 구미교육지원청
(청사 개축) 6,085㎡(1,840평) 34,399,203천 원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 (7건)

- 김천중앙고등학교

- (이전 신축) 11,915m²(3,604평) 29,121,761천 원
- 호명초등학교
- (교사동 증축) 1,969m²(596평) 4,997,519천 원
- 문경서중학교
- (다목적강당 증축) 750m²(227평) 2,969,218천 원
- 상대초등학교
- (다목적강당 증축) 886m²(268평) 3,000,000천 원
- 외동중학교
-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1,115m²(337평) 4,002,648천 원
- 옥계중학교
- (다목적강당 증축) 1,938m²(586평) 4,480,159천 원
- 영주여자중학교
-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1,644m²(497평) 4,813,447천 원

○ 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1건)

- 청도교육지원청
- (통합지원센터 증축) 1,866m²(564평) 4,196,487천 원

□ 처분재산 20,497천 원

- 토 지: 19,360m² 20,497천 원(1건)

○ 임야 매각(1건)

- 상산전자고등학교 19,360m²(5,856평) 20,497천 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변경 재산 4,919,896천 원

- 건 물: 1,507m² 4,919,896천 원(1건)

○ 취득위치 및 취득금액 변경 (1건)

- (가칭)경주한국어교육센터

당초 : 경주시 금성로 347번길 30 (3,036,808천 원)

변경 : 경주시 내남면 노곡2길 26-6 (4,919,896천 원)

경상북도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26일

경상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도립노인전문병원 현황 (2020년 1월말 기준)

가. 경상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 설립 : 2005. 3. 7.(소재지 : 김천시 어모면 신애길 100-10)
- 대표자 : 정 중 현(신애의료재단)
- 규모 : 대지 9,372㎡ 건물 7,449.27㎡(대지, 건물 道소유)
- 병상수/인력 : 256병상/86명
- 치매안심병원지정('19. 9. 19) 보건복지부 2호

나. 경상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 설립 : 1999. 4. 29. (소재지 : 안동시 남후면 남일로 1463)
- 대표자 : 염 진 호(안동유리의료재단)
- 규모 : 대지 8,522㎡ 건물 10,911.8㎡(대지, 건물 道소유)
- 병상수/인력 : 363병상/238명
- 치매안심병원지정('19. 9. 16) 보건복지부 1호

다.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 설립 : 2001. 1. 9 (소재지 : 경산시 경안로 23-10)

- 대표자 : 이 의 융(성심의료재단)
- 규모 : 대지 3,635㎡ 건물 6,649.76㎡(대지, 건물 道소유)
- 병상수/인력 : 299병상/159명
- 치매안심병원지정('19. 12. 16) 보건복지부 4호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위탁사항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관계된 외래진료과 설치 운영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자문
 - 그 밖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 자격 : 의료법인, 의료인, 지방의료원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경상북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3. 민간위탁 필요성

- 급속한 초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의 전문화된 치매치료를 확대 추진하여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화 되는 바, 해당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 취득재산 22,125,873천 원

- 토 지: 86㎡ 7,895천 원(1건)
- 건 물: 6,577㎡ 22,117,978천 원(6건)

○ 수학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1건)

- 중부(칠곡)수학체험센터
(국유지 취득) 86㎡(26평) 7,895천 원

○ 수학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 (2건)

- 서부(상주)수학체험센터 950㎡(287평) 2,875,429천 원
- 중부(칠곡)수학체험센터 987㎡(299평) 3,544,808천 원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 (4건)

- 안동고등학교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증축) 1,036㎡(313평) 3,250,174천 원

- 율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1,000m²(303평) 3,510,473천 원
- 하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1,486m²(450평) 5,142,672천 원
- 용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1,118m²(339평) 3,794,422천 원

== 예 산 안 ==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지사('20. 3. 19)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20년 3월 30일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 세입·세출 예산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242,000,000	100.00%	9,635,500,000	100.00%	606,500,000	6.29%
일반회계	8,995,300,000	87.83%	8,445,000,000	87.64%	550,300,000	6.52%
특별회계	1,246,700,000	12.17%	1,190,500,000	12.36%	56,200,000	4.72%
기타특별회계	1,246,700,000	12.17%	1,190,500,000	12.36%	56,200,000	4.7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13,450,000	5.99%	613,450,000	6.37%	0	0.00%
치수사업특별회계	9,003,511	0.09%	4,910,000	0.05%	4,093,511	83.3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065,635	0.12%	7,020,000	0.07%	5,045,635	71.88%
발전소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97,090,251	0.95%	93,340,000	0.97%	3,750,251	4.0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9,290,000	0.48%	49,290,000	0.51%	0	0.00%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7,162,464	0.07%	7,000,000	0.07%	162,464	2.32%
소방안전특별회계	458,638,139	4.48%	415,490,000	4.31%	43,148,139	10.38%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항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242,000,000	100.00 %	9,635,500,000	100.00 %	606,500,000	6.29%
100 지방세수입	2,500,000,000	24.41 %	2,520,000,000	26.15 %	△20,000,000	△0.79%
110 지방세	2,500,000,000	24.41 %	2,520,000,000	26.15 %	△20,000,000	△0.79%
200 세외수입	185,734,585	1.81 %	154,196,112	1.60 %	31,538,473	20.45%
210 경상적세외수입	39,056,505	0.38 %	36,292,095	0.38 %	2,764,410	7.62%
220 임시적세외수입	146,678,080	1.43 %	117,904,017	1.22 %	28,774,063	24.40%
300 지방교부세	1,285,693,599	12.55 %	1,176,757,400	12.21 %	108,936,199	9.26%
310 지방교부세	1,285,693,599	12.55 %	1,176,757,400	12.21 %	108,936,199	9.26%
500 보조금	5,346,448,855	52.20 %	4,867,964,675	50.52 %	478,484,180	9.83%
510 국고보조금등	5,346,448,855	52.20 %	4,867,964,675	50.52 %	478,484,180	9.83%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4,122,961	9.02 %	916,581,813	9.51 %	7,541,148	0.82%
710 보전수입등	111,682,792	1.09 %	133,451,000	1.38 %	△21,768,208	△16.31%
720 내부거래	812,440,169	7.93 %	783,130,813	8.13 %	29,309,356	3.74%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242,000,000	100.00 %	9,635,500,000	100.00 %	606,500,000	6.29 %
010 일반공공행정	1,014,948,283	9.91 %	967,960,080	10.05 %	46,988,203	4.85 %
020 공공설치및안전	616,912,107	6.02 %	606,399,343	6.29 %	10,512,764	1.73 %
050 교육	110,380,384	1.08 %	107,839,953	1.12 %	2,540,431	2.36 %
060 문화및관광	588,412,780	5.75 %	558,933,058	5.80 %	29,479,722	5.27 %
070 환경	650,598,926	6.35 %	623,743,871	6.47 %	26,855,055	4.31 %
080 사회복지	4,015,571,579	39.21 %	3,679,116,582	38.18 %	336,454,997	9.14 %
090 보건	184,403,356	1.80 %	149,085,705	1.55 %	35,317,651	23.69 %
100 농림해양수산	1,146,344,845	11.19 %	1,115,908,402	11.58 %	30,436,443	2.73 %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2,470,049	3.34 %	237,678,505	2.47 %	104,791,544	44.09 %
120 교통및물류	284,657,995	2.78 %	273,286,196	2.84 %	11,371,799	4.16 %
140 국토및지역개발	587,242,831	5.73 %	584,672,278	6.07 %	2,570,553	0.44 %
150 과학기술	59,101,224	0.58 %	51,701,804	0.54 %	7,399,420	14.31 %
160 예비비	24,080,869	0.24 %	68,514,930	0.71 %	△44,434,061	△64.85 %
900 기타	616,874,772	6.02 %	610,659,293	6.34 %	6,215,479	1.02 %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 성 액	2020년도 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당초		변경		
		수 입	지출	수 입	지 출	
남북교류협력기금	5,247	1,093	0	593	0	5,840
통합관리기금	134,011	10,513	7,272	10,513	42,272	102,253
지역개발기금	1,144,458	326,006	326,123	326,006	421,123	1,049,342
중소기업육성기금	213,554	26,778	88,253	26,778	166,253	74,079
농어촌진흥기금	133,615	31,034	65,000	7,385	77,000	64,000

○ 기금운용계획세부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기금명	변경액	기정액	증감	변경내역	
				수입	지출
남북교류 협력기금	594	1,094	△500	· 일반회계 전출금 감 500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감 500
통합관리 기금	144,524	144,524	0	· 변경내역 없음	· 예수금원금상환 증 35,000 · 예치금 감 35,000
지역개발 기금	710,864	659,701	51,163	· 예치금회수 증 51,163	· 시·군 용자금 증 95,000 · 도 용자금 증 30,000 · 예치금 감 73,837
중소기업 육성기금	240,333	206,282	34,051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증 35,000 · 예치금 회수 감 949	·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 자금지원 증 40,000 ·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특별 경영자금 지원 증 30,000 ·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신용 보증료 지원 증 8,000 · 예치금 감 43,949
농어촌 진흥기금	136,000	83,444	52,556	· 용자금회수 감 23,650 · 예치금회수 증 76,206	· 비용자성사업비 증 2,000 · 용자성사업비 증 10,000 · 예치금 증 40,556

□ 수정조서 : 붙임

2020년도 제1회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단위 : 천원)

명세 서책	실국명	내용(부기명)	조정내역			비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광역조서] 일반회계		2건	15,645,369	9,080,869	△6,564,500	
54	기획조정실	일반예비비	15,345,369	9,080,869	△6,264,500	
74	일자리경제실	코로나극복노사단합한마당	300,000	0	△300,000	

(단위 : 천원)

명세 서책	실국명	내용(부기명)	조정내역			비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광역조서] 일반회계		19건	16,761,500	23,326,000	6,564,500	
73	일자리경제실	경북4050행복일자리프로젝트	1,200,000	1,389,000	189,000	
74	일자리경제실	노사파트너십교육및연수지원	136,000	170,000	34,000	
74	일자리경제실	희망경북만들기노사협력사업	48,000	60,000	12,000	
74	일자리경제실	경상북도공무원직근로자체육대회	35,000	50,000	15,000	
79	일자리경제실	기능경기대회(지방및전국)	600,000	650,000	50,000	
328	환경산림자원국	포항운하위티프론트도시숲조성	240,000	300,000	60,000	
328	환경산림자원국	포항장항시설녹지유공화통산조성사업	24,000	30,000	6,000	
328	환경산림자원국	경산남매도심수변숲조성	192,000	240,000	48,000	
328	환경산림자원국	경산임당고분군도심숲조성	120,000	150,000	30,000	
328	환경산림자원국	경산팔공산장군박위원효암길정비	60,000	75,000	15,000	
508	건설도시국	경상북도건축문화제개최	49,500	55,000	5,500	
511	건설도시국	용골UI고류협력통울위한통역비	0	5,000	5,000	
511	건설도시국	용골UI도시개발고류협력사업	0	10,000	10,000	
511	건설도시국	용골UI공무원도시개발기술고류	0	35,000	35,000	
514	건설도시국	강사항활형로	0	50,000	50,000	
518	건설도시국	사리도확포장사업	3,086,000	4,086,000	1,000,000	
518	건설도시국	지방도유지관리사업	6,203,000	8,203,000	2,000,000	
520	건설도시국	지방도유지관리사업	4,568,000	6,068,000	1,500,000	
520	건설도시국	교향개체사업	200,000	1,700,000	1,500,000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14회 임시회)



2020. 4. 인쇄 / 2020. 4.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